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 풍로

(교통안전공단 교수·박사)

1. 미리말

위 제목의 적용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보행자의 보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면 되고, 차량의 진행 신호일 때, 즉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그 곳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이 상실된다. 신호기

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에 이르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안전운전을 하면 된다.

2. 관련 판례

가.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의 등화가 고장인 때에도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로 인정된다.(89도1696)

나.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로 상에 정지하고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리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92도2077)

다. 횡단보도 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사고시 손수레는 보행자로 간주한다.(90도761)

3.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1. 장 소 의 요 건	• 횡단보도 내	• 보행자 정지신호 때의 횡단보도
2. 피해자의 요 건	•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자동차에 충격되어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정지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어난 사고 •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고 들어누워 있거나, 교통정리, 싸우던 중, 택시 잡던 중 등 보행의 경우가 아닌 때
3. 운전자의 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 횡단보도 전에 정지한 차량을 추돌, 밀려나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 보행신호시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건너던 중 주의신호 또는 정지신호된 상황에서 마저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정지신호에 건너던 중 일어난 사고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변경되어 중앙에 서 있던 중 일어난 사고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변경되어 되돌아 가던 중 일어난 사고
4. 시 설 물 설 치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10조에 의거 지방 경찰청이 설치한 횡단보도 ※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횡단보도 표시만 한다. ③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안되어 횡단보도를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④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단지나 학교, 군부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 설치된 경우는 제외 ※ 횡단보도 노면 표시가 있고 표지판 미설치 시 횡단보도로 인정 추세(사실상 횡단보도로 간주)

4. 시고시례와 유형

가. 횡단보도에 해당하는 사례

(1)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어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점멸신호

또는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을 때 보행자가 계속 진행하거나 되돌아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86도 549. 86. 5. 27. 대법원 87도 471. 87. 7. 16)

- (2)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된다.(대법원 90도 761. 90. 10. 16)
- (3) 고속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벗어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정상 횡단하던 중 질주하여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났다가 그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지점이 비록 횡단보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된다.

(4) 횡단보도 신호기가 일시 고장난 상태로 횡단보도 표시만 되어 있는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해당된다.(대법원 89도 1696. 90. 2. 9)

나. 횡단보도로서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 (1)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일 때 횡단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2)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신호가 변경되어 중앙에 서있던 중 일어난 사고
- (3) 횡단보도의 신호가 변경되어 되돌아가던 중 일어난 사고

다. 피해자의 구체적 행동에 따른 적용례

구체적 상황	적용 법 조
① 횡단보도전 보도에서 신호 대기하다 출발 보행 속도가 느려 다 건너기 전 신호가 변경되며 발생된 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② 횡단보도전 보도에서 신호 대기하다 출발하여 건너던 중 보행신호가 절아 신호가 변경되며 발생된 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③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로 된 후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너던 중 발생된 사고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현저하게 뒤늦은 횡단보도 진입의 경우)
④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멸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너던 중 발생된 사고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
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될 때 진입하여 건너던 중 발생된 사고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

5. 횡단보도내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법원 태도

통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은 일부 피해자의 특별한 행동의 경우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행자로 볼 수 없다 하여 특례법 적용을 배제하는 추세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하는 예(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 (1)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
- (2) 손수레를 끌고 건너고 있던 중(90도 761)
- (3) 자전거, 오토바이를 끌고 건너고 있던 중

나. 보행자로 볼 수 없는 예

- (1) 횡단보도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는 경우(93도 1118)
- (2)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중
- (3) 횡단보도 내에서 싸우고 있는 중
- (4)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는 중
- (5) 횡단보도 내에서 적재물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 등
- (6) 보도에 서있다가 횡단보도 내로 넘어진 경우 등